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1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이만희·박덕흠·권성동

김선교・이양수・서천호

김기웅 • 구자근 • 정희용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또한,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, 청소년,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, 청년, 청년농업인까지

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2조)

주요내용

- 가.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 이,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(안 제1조)
 -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 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
- 나.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(안 제2조제1호제2호)

법률 제 호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"를 "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"로, "국가발전"을 "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"으로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의는"을 "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근거한"을 "근거한 어린이, 청소년,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개 정 안 햀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 제1조(목적)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 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 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 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 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----- 농업과 농촌의 지 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 다. 하고 국가발전-----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---- 뜻은 ----.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"4에이치활동"이란 4에이치 2. --------- 근거한 어린이, 청소년,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 -----가. ~ 라. (생 략)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